

등록번호	청소행정과-26051
등록일자	2014. 12. 16.
결재일자	2014. 12. 1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청소운영팀장	청소행정과장	환경도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권기업	안승준	오문식	여장권	조인동	12/17 문석진
협 조	음식물관리팀장 유명선 재활용팀장 김천배				

— 「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」 —
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 대행 연장계약체결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약내용	협약결과	

서 대 문 구
청소행정과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 연장계약체결 계획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·운반과 지속적인 청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종량제수수료 인상과 대행대가 지급방식변경 및 지역제한해제에 대한 시조례개정 등을 대비하여 생활폐기물(재활용, 음식물, 대형폐기물처리) 수집·운반 대행업체와의 제한적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함.

1 추진경위

-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과 쾌적한 환경조성
-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의 대행계약기간 만료 도래

2 관련근거
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(생활폐기물 처리 등) 제2항
-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(생활폐기물 처리 등)
-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(생활폐기물의 처리)
- 환경부 예규 제495호(2013.9.11)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

3 대행업체 현황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 대행업체 및 대행지역

업체명 구분	서부환경(주)	서울환경용역(주)	아이앤지환경(주)
대표자	최진호	이상봉, 유관주	최승호
주소	남가좌동 329-35	북아현동 1-452	남가좌동 329-35 (402호)
생활폐기물 영업구역	홍은1·2동, 남가좌1·2동, 북가좌1·2동	충현동, 천연동(현저동제외) 북아현동, 신촌동	현저동, 연희동, 홍제1·2·3동

□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현황

(2014. 10월말 현재)

구분 \ 업체명	서부환경(주)	서울환경용역(주)	아이앤지환경(주)
운전원	13명	11명	9명
미화원	25명	25명	20명
차 량	15대	13대	10대
컨테이너	11대	11대	5대

□ 대행업체 처리실적

(2014. 10월말 현재)

구분 \ 업체명	서부환경(주)		서울환경용역(주)		아이앤지환경(주)	
	년처리량	일처리량	년처리량	일처리량	년처리량	일처리량
생활폐기물	8,148톤	27.2톤	9,302톤	31톤	7,601톤	25.3톤
음식물폐기물	7,392톤	24.5톤	7,472톤	24.9톤	7,635톤	25.1톤
사업장폐기물	222톤	0.7톤	1,178톤	3.9톤	-	-
재활용품 수집량	2,507톤	8.4톤	3.161톤	10.5톤	3,055톤	10.2톤

□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및 대행지역

(2014. 10월말 현재)

구분 \ 업체명	서부환경(주)	웰빙환경(주)
대표자	최 진 호	장 오 식
주 소	남가좌동 329-35	남가좌동 332-27호
영업구역	홍제1·2·3동, 홍은1·2동, 남가좌1·2동, 북가좌1·2동	총현동, 천연동, 북아현동, 신촌동, 연희동
처리량	1,853톤	1,124톤

□ 현행 대행체계의 문제점

- 대행대가 지불방법 “독립채산제”의 지방재정법 위반
 - 지방재정법 제15조 “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” 및 제43조 “예산총계주의 원칙” 위반
 - 수수료 처리 회계투명성이 저하,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정운영 필요
- 낮은 임금 등 대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열악
 -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직영 대비 상대적 저임금(직영 환경미화원의 54%수준)

□ 개선방향

-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해소
 -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단계적 전환
-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비용 지불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해소
 - 수집·운반비 세출예산 편성 대행업체 지불
 -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산정은 원가계산에 의거 지급
 - 원가계산에 의한 정확한 장비·인력 투입에 근거한 비용지급으로 개선

□ 종량제수수료 현실화

- '97년 종량제 수수료 인상 후 동결로 원가에 현저히 미달
- 2015년 상반기 중 종량제 수수료 인상 -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동일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 제시
 - 생활쓰레기 20ℓ : 34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
 - 음식물쓰레기 2ℓ : 40원에서 140원으로 인상
- 종량제수수료 인상 후 전액 세입조치
- 원가계산에 의한 수집·운반 비용 대행업체에 지불
 - 상반기 중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원가계산 실시
 -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(톤당 단가제)로 변경

□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지역제한규정 개정예정

- 제7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업의 영업구역) 시장은 법 제25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허가시 영업구역은 당해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전역으로 한다

□ 폐기물관리법 및 구조례 관련규정

-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【폐기물관리법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제2항】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·군·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영업구역을 자치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나,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구역을 자치구로 제한 함
【폐기물관리법 제25조(폐기물처리업) 제7항】
-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·운반·재활용 또는 처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
【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제1항】

5

대행계약의 연장계약체결

- 대행기간 : 2015. 1. 1. ~ 시·구조례개정에 따른 지역제한해제 및 종량제 수수료인상과 대가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공개경쟁계약실시까지
- 계약방법 : 등록허가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 연장계약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.
 -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7조(영업구역제한) 및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(허가 받은자에게 대행구역을 지정)
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제25조 제6항
-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제4조 제2항

□ 계약대상 : 생활폐기물류 수집·운반(생활, 재활용, 음식물, 대형폐기물)

□ 대행계약으로 동일업체 선정시 효율성

- 일관성 있는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혼란 방지 및 기동순찰시 한번에 처리함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민원처리시 신속대응 가능
-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동일한 요일에 수거하므로 혼합배출시 처리가 용이하고 수거 후 뒷마무리 철저히 가로환경 청결유지 가능
- 대행업체의 구분이 명확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함으로 신속한 처리 가능
-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이 가능하여 통합작업으로 유기적인 업무체계유지

□ 대행계약의 연장계약사유

- 자치단체와 대행업체 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, 기 구축된 긴밀한 네트워크 등을 통한 협조체계 구성이 수월하게 이루어짐
- 원활한 수거체계 확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유지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의 경쟁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경쟁입찰은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이루어 질 우려가 있음
- 비 숙련 노동자의 작업시 비효율화로 인한 주민혼란 방지
- 차량 및 장비의 유희화로 인한 기존 업체의 손실 보존

□ 단기계약시 문제점

- 불투명한 재계약으로 장비교체시기 및 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
- 청소의 연속성 유지 및 책임의식 결여
- 대행업체 환경미화원, 직원의 고용 불안 및 기술축척 불리

□ 단계적 공개경쟁 추진

- 2015년 상반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
- 주된 영업소 소재 자치구로 영업구역 제한 - 서울시 조례개정 필요
- 대행대가 지불방법 변경(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)시 대행계약서에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계약 조항 명시 추진

- 청소대행 방법 변경시(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) 계약서에 재계약 명시
-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수집·운반업 대행개선 방안 추이에 따른 점차적인 경쟁입찰 추진
- 생활폐기물 종류별 수집·운반 대행업체 구분하여 재계약 추진
- 생활폐기물 종류별 수집·운반 대행업체와의 연장계약의 기간은 종전계약 기간인 2년이내